

울산제일일보

HOME 오피니언

[안보의 길]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2.27 23:23

요즘 온라인매체에 등장하는 군사용어 중에 '정전협정'이 있다. 한 대선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지적이 제기였다.



'정전협정(停戰協定)'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최고사령관,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판문점에서 맺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번 논란의 요지는 비무장지대 내 전방사단 관측소가 유엔사 관할구역인데도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출입했고, 민간인이 전투복 차림에 '군사경찰' 완장까지 찬 데다 일부 수행원은 승인도 없이 출입했다는 데 있었다.

정전협정을 때로는 '휴전협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영문식 표기가 'Armistice Agreement'이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총 5개 조 6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9항은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자'를 민사행정 및 구제업무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책임자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개 '38선'이라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와 북한은 협정에 따라 각각 2km씩 후퇴해 군사적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방문지인 관측소가 비무장지대에 있었고, 이곳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지대의

특성상 상호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등 우발적 상황을 막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금지된다. 이 과정과 방법에서 시비가 생긴 듯하다.

여기서 필자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시각이 아닌 군사안보적 시각에서 논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후보 측에서는 국방부의 사전 허락을 받았고, 유엔사 관계자와도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하자면, 국방부 승인은 받았으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자인 유엔사 허락은 명확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 캠프에는 예비역 장성도 있을 텐데, 왜 사전 준비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일까. 이는, 정치권 인사들이 군사지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때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그리된 듯하다.

짐작컨대, 방문단체에서 공식적인 협조를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공문 등으로 구하지 않고 정부 기관인 국방부에 공식 협조를 먼저 요청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방부도 군사지역 방문을 승인하기 전에, 유엔사에 공식 협조를 먼저 구했어야 했다. 오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이번 군사지역 방문을 이른바 '언택트', '랜선'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시점임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차선책('언택트', '랜선' 방식)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니 자세한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학부생 시절, 법학개론에서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를 배운 적이 있다. 국가 간에 맺은 군사협정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신, 유엔사에서도 협정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 넓게 개방하는 한편 그 세부절차와 방법 면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종전선언'을 논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기환 민방위 전문강사·예비역 소령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제일일보